

투자자문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

제1조[목적]

이 기준은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58조 제1항 및 제2항, 제97조 제1항 제6조에 의거하여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[수수료율]

1. 투자자문 수수료는 만기정산형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단,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	선취수수료	성과 수수료	기준 수익률	정산 시점
투자자문수수료	계약금액의 1%	기준 수익률 초과분의 20%	연 5%	계약종료시점

2. 기준수익률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율이며,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기준수익률을 적용합니다.

제3조[선취수수료]

1. 선취수수료는 자문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
2. 선취수수료는 연 1%로 산정하며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추가로 징수합니다.

제4조[성과 수수료]

1. 투자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대해 평가차익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제2조의 요율율을 적용하여 성과수수료를 징수합니다. 단, 고객과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
제5조[계약 자산의 평가]

1. 계약 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,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,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일 전일(이하 평가기준일)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.

2. 계약체결일 전 권리락, 배당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명하게 되는 주식, 배당금은 해당 자산의 입금(고)일자의 증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.

3. 계약기간 종료 후 자문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락, 배당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수명하게 되는 주식, 배당금은 계약종료 시 평가 자산에 반영하여 평가 금액을 조정합니다.

4.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 자산을 기준으로 계약 만기 또는 계약해지 시 평가 자산의 증감률로 한다. 평가 자산의 계산은 1항의 평가기준일을 준용합니다.

제6조[투자자문 수수료의 계산]

1. 투자(자문) 수수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자산에 제2조에서부터 제4조를 근거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.

2. 성과수수료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성과 수수료	$(\text{평가 금액} - (\text{원금} * (1 + \text{기준수익률}))) * \text{성과수수료율}$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계약해지 시	산정기준수익률	$(\text{연 수익률}/12) \cdot \text{해당산정기간}$
	성과 수수료	$(\text{평가 금액} - (\text{원금} \cdot (1 + \text{산정기준수익률}))) \cdot \text{성과수수료율}$

3. 제5조3항의 경우 예상배당금과 실제배당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자문 성과를 재평가하여 성과 수수료 및 해지수수료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.

제7조[계약해지 시의 수수료]

1. 성과수수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2. 계약해지 시에는 성과수수료와는 별도로 성과수수료의 10%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단, 고객과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.
3. 계약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선취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. 단,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[투자자문 수수료의 징수]

1. 선취수수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투자자산 추가증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제2조에서 제6조를 근거로 산정된 선취수수료 전액을 당사에 지급 하셔야 합니다.
2. 성과 수수료 및 해지수수료는 계약 만기 또는 계약해지 시 제2조에서부터 제7조에 의거 산정된 성과 수수료 및 해지 수수료 전액을 계약 만기일 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 하셔야 합니다.